##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07 발의연월일: 2024. 10. 8.

발 의 자:김선교·김상훈·김성원

구자근 · 김예지 · 김소희

이철규 · 송석준 · 김상욱

윤한홍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을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하여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, 이를 위반 하여 무단 출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 고 있음.

하지만, 이러한 규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제 고 및 자율적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할 필요 가 있음

이에 출입통제장소에 출입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300 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연안해역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25조).

법률 제 호

##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.

1.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5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	제25조(과태료) ①		
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			
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		
<u> &lt;신 설&gt;</u>	1.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		
	지역을 출입한 사람		
<u>1</u> . ∼ <u>5</u> . (생 략)	$\underline{2}$ . $\sim$ $\underline{6}$ . (현행 제 $1$ 호부터 제 $5$ 호		
	까지와 같음)	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②		
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			
과태료를 부과한다.			
1. 제10조제1항에 따른 출입통제	<삭 제>		
지역을 출입한 사람			
<u>2</u> .· <u>3</u> . (생 략)	<u>1</u> .・ <u>2</u> . (현행 제2호 및 제3호와		
	같음)		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		